

의안번호	2202718
의 퇴 인	권향엽의원
회 답 일	2024. 08. 09.
추 계 번호	24A1673

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5억 3,200만원, 2029년 28억 6,5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10억 800만원(연평균 22억 2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	연평균
국가·지자체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손해보험 가입 (안 제21조의2)	1,532	1,869	2,207	2,536	2,865	11,008	2,202

주: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1조의2 (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)	○ 다음 각 호의 자는 전기자동차(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3호1)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)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구역의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해당 시설의 위치·설치수량 등을 신고하여야 함(제1항) － 1. 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－ 2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－ 3. 그 밖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○ 제1항 각 호의 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·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하여야 함(제2항) ○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·방법·절차, 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·보상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4항)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21조의2 (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)	○	—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보험료를 추계
 - 개정안에 따른 손해보험 가입에 의한 보험료는 전기자동차 충전 요금에 반영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함
- 개정안 부칙 제2조는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

1)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(생략)

3. “전기자동차”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(動力源)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.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비용추계 대상은 “손해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”로 하며,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운영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험료 금액으로 함
 -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급 실적 및 계획을 바탕으로 추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주체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규모에 충전시설당 화재알림설비 설치 단가를 곱하여 추계함
 - －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주체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전망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계획 자료를 바탕으로 한 총량 추정치에 운영주체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현황에 근거한 운영주체별 비중을 곱하여 추산함
 - 2023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현황은 환경부 제출자료에 따르며, 관계부처 합동(2023. 6. 29.)에 제시된 계획 규모를 바탕으로 2024년, 2026년, 2028~2029년은 선형보간법을 활용하여 추정
 - － 관계부처 합동 ‘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’(2023. 6. 29.)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2025년 59만기, 2027년 85만기, 2030년 123만기가 보급될 계획임

[표 3]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추정: 2023~2030년

(단위: 만기)

구 분	2023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	실적	추정	계획	추정	계획	추정	추정	계획
전기자동차 충전시설	31	45	59	72	85	98	110	123

자료: 환경부 제출자료와 관계부처 합동(2023. 6. 29.)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주체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비율은 환경부 제출자료를 활용하여 2024년 6월 누적 기준인 2.6%가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
[표 4] 운영주체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현황: 2024년 6월말 기준

(단위: 기, %)

운영주체	규모	비중
국가(환경부)	8,504	2.3
지방자치단체	1,052	0.3
한국전력	10,922	3.0
민간 등 기타	347,578	94.4
합 계	368,056	100.0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	9,556	2.6

주: 무공해차 통합누리집(ev.or.kr) 등록 기준

자료: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[표 5]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주체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추정: 2025~2029년

(단위: 천기)

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 전기자동차 충전시설	15.3	18.7	22.1	25.4	28.6
－ 증분	15.3 ¹⁾	3.4	3.4	3.3	3.3

주: 1) 2025년의 추정치는 2025년까지의 충전시설 누적 규모

1. 단수 조정된 수치임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1기당 연간 10만원의 보험료가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 - － 대인 1.5억/인당(연간한도 100억원), 대물 10억원/사고당 기준으로 산정 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1기당 연간 약 10만원의 보험료가 발생 가능(자료: 손해보험협회²⁾)

2)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, 시설 형태별 차등 위험도에 따른 추가할인을 계산 등을 위한 충전소 상세현황 자료가 부족하고 향후 증설 시 형태별 개수 추정 한계 등으로 평균단가를 제시하였으며, 다만, 의무보험이 도입되어 손해보험 가입이 전체로 확대되는 경우 충전시설 1기당 보험료가 연간 10만원 이하로 인하될 수 있음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향후 5년간 총 110억 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

[표 6] 국가·지자체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손해보험 가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	연평균
국가·지자체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손해보험 가입 (안 제21조의2)	1,532	1,869	2,207	2,536	2,865	11,008	2,202

주: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‘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’(2023. 6. 29.)의 충전시설 확충 계획을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신헌태	권아영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헌태	02-6788-4653	heontshin@assembly.go.kr